

# <간이투자설명서>

(작성기준일 : 2018. 5. 20.)

## 플러스 ETF분할매매 증권투자신탁1호(채권혼합) (펀드 코드: BD101)

투자 위험 등급 4등급 (보통위험)					
1	2	3	4	5	6
매우 낮은 위험	낮은 위험	다소 높은 위험	보통 위험	높은 위험	매우 높은 위험

이 간이투자설명서는 '플러스 ETF분할매매 증권투자신탁1호(채권혼합)'의 투자설명서의 내용 중 중요사항을 발췌 요약한 정보를 담고 있습니다. 따라서 **동 집합투자증권을 매입하기 전 투자설명서를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플러스자산운용(주)는 이 투자신탁의 **투자대상자산의 종류 및 위험도** 등을 감안하여 4등급으로 분류하였습니다. 이 투자위험 등급은 집합투자업자가 분류한 것으로 판매회사의 분류 등급과는 상이할 수 있습니다.

### I. 집합투자기구의 개요

<b>투자자 유의사항</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집합투자증권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지 않는 실적배당상품으로 투자원금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투자에 신중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li> <li>· 금융위원회가 투자설명서의 기재사항이 진실 또는 정확하다는 것을 인정하거나 그 증권 가치를 보증 또는 승인하지 아니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li> <li>· 간이투자설명서는 증권신고서 효력발생일까지 기재사항 중 일부가 변경될 수 있으며, 개방형 집합투자증권인 경우 효력발생일 이후에도 변경될 수 있습니다.</li> <li>· 증권신고서, 투자설명서상 기재된 투자전략에 따른 투자목적 또는 성과목표가 실현된다는 보장이 없으며, 과거의 투자실적이 미래에도 실현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li> </ul> <p>※ 추가적인 투자자 유의사항은 투자설명서 '투자결정시 유의사항 안내' 참조</p>
---------------------	---

<b>집합투자기구 특징</b>	이 투자신탁은 투자신탁재산의 50% 이상을 채권에 투자하고, 투자신탁재산의 30% 이하를 주식, 주식관련 상장지수집합투자증권 및 주식및채권관련 장내파생상품에 투자하여 이자 수익 및 자본수익을 추구합니다.		
<b>분류</b>	투자신탁, 증권(혼합채권형), 개방형, 추가형, 종류형		
<b>집합투자업자</b>	플러스자산운용주식회사(02-3787-2700)		
<b>모집(판매) 기간</b>	추가형으로 계속 모집 가능	<b>모집(매출) 총액</b>	10조좌
<b>효력발생일</b>	2018년 05월 31일	<b>존속 기간</b>	별도로 정해진 신탁계약기간 없음
<b>판매회사</b>	집합투자업자(www.plusasset.com) 및 금융투자협회(www.kofia.or.kr) 홈페이지 참조		

종류(Class)	A	A-e	C	C-e	C-i	
<b>가입자격</b>	제한없음	온라인가입자	제한없음	온라인가입자	최초납입액 30억이상 수익자	
<b>판매수수료</b>	납입금액의 0.4%이내	납입금액의 0.2%이내	없음	없음	없음	
<b>환매수수료</b>	없음					
<b>보수 (연%)</b>	<b>판매</b>	0.50	0.25	0.665	0.33	0.10
	<b>운용 등</b>	운용보수: 0.30, 신탁보수: 0.02, 사무관리보수: 0.015				
	<b>기타</b>	0.0060	0.0001	0.0060	-	0.0058
	<b>총보수비용</b>	0.8410	0.5851	1.0060	0.665	0.4408

<b>※ 주식사항</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기타비용은 증권 의 예약 및 결제비용 등 이 투자신탁에서 경상적, 반복적으로 지출되는 비용(증권거래비용 및 금융비용 제외)등에 해당하는 것으로 회계기간이 경과한 경우에는 직전 회계연도의 기타비용 비율을 추정치로 사용하며, 회계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작성일까지의 기타비용 비율을 연환산하여 추정치로 사용하므로 실제 비용은 이와 상이할 수 있습니다.</li> <li>· 판매 및 운용보수 등은 매 3개월마다 지급되며, 기타보수는 사유 발생 시 지급됩니다.</li> <li>· 증권거래비용, 기타 관리비용 등 추가비용을 부담할 수 있습니다.</li> <li>· 생략된 종류(C-f, C-w, C-p1, C-p2)에 대한 세부사항은 정식 투자설명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li> </ul>
---------------	--

<b>매입 방법</b>	-17시 이전: 제2영업일에 공고되는 기준가격 적용 -17시 경과 후: 제3영업일에 공고되는 기준가격 적용	<b>환매 방법</b>	-17시 이전: 제3영업일 기준가격 적용하여 제4영업일에 지급 -17시 경과 후: 제4영업일 기준가격 적용하여 제5영업일에 지급
<b>기준가</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기준가격 산정방법: 기준가격은 공고일 직전일의 대차대조표상에 계상된 투자신탁의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차감한 금액을 직전일의 수익증권의 총좌수로 나누어 1,000좌 단위로 원미만 셋째자리에서 4사5입하여 원미만 둘째자리까지 계산합니다.</li> <li>· 공시방법 및 공시장소: 1,000좌 단위로 원미만 셋째자리에서 4사5입하여 원미만 둘째자리로 계산하여 공시하며 집합투자업자(www.plusasset.com)·판매회사·한국금융투자협회(www.kofia.or.kr)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시합니다.</li> </ul>		

## II.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정보

### (1) 투자전략

#### 1. 투자목적

이 투자신탁은 채권을 법시행령 제94조제2항제4호에서 정하는 주된 투자대상자산으로 하여 수익을 추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 투자신탁은 투자신탁재산의 50% 이상을 채권에 투자하고, 투자신탁재산의 50% 이하를 주식, 주식관련 상장지수집합투자증권(이하 "주식관련 ETF"라 함) 및 주식및채권관련 장내파생상품에 투자할 계획입니다.

그러나 상기의 투자목적이 반드시 달성된다는 보장은 없으며, 집합투자업자, 신탁업자, 판매회사 등이 투자신탁과 관련된 어떠한 당사자도 투자원금의 보장 또는 투자목적의 달성을 보장하지 아니합니다.

#### 2. 투자전략

이 투자신탁은 투자신탁재산의 50% 이상을 채권에 투자하고, 투자신탁재산의 50% 이하를 주식, 주식관련 상장지수집합투자증권 및 주식및채권관련 장내파생상품에 투자할 계획입니다.

#### <주식 및 주식관련ETF 운용전략>

##### ① ETF 분할매매전략

###### ▶ 개요

전략 구분	최적 시장상황	전략개요	전략실행 특징
턴어라운드 매매	시장의 Turn-around 국면	하락하던 주가지수 반등 확인 → 매수 상승하던 주가지수 반락 확인 → 매도	박스권 하단이나 하단의 돌파흐름 발생시 변동성 매매전략의 보완 역할

###### ▶ 매매원칙

- 매크로분석+수급분석+기술적분석을 바탕으로 한 분할매수 및 분할매도 전략 이행
- 국내 상장된 국내외 주가지수 관련 ETF만을 사용하여 포지션 구축(KODEX200, TIGER200, KODEX 레버리지, TIGER미국S&P500선물, KODEX미국S&P500선물 등)
- 장중 매매를 지양하고 장 마감 동시호가 전후에 신호를 확인하고 비중 조절

##### ② 마켓타이밍 전략

구분	전략실행 방법
실행전략 개요	주가지수(KOSPI200)의 단기 방향성 예측을 통한 펀드의 노출수준 관리 시장 상승 시 노출도 확대, 시장의 하락국면에서 노출도 축소 변동성 축소 시 투자비중 확대, 변동성 확대 시 전략 실행 중단, 포지션 정리
노출 비중	-10% ~ +10% (국내 상장된 국내외 주가지수 관련 ETF 이용)
실행 주기	상시 운용하는 전략이 아니며 시장의 기회 발생시에만 단기적으로 실행 및 포지션 청산

##### ③ Event 전략

- 블록 트레이딩 : 대주주 등 지분매각 시 단기매매이익 추구, 우량기업 유상증자 참여 등
- 선별적 공모주 투자 등
- 전환사채, 신주인수권부사채, 교환사채(A-이상) 등 기회 발생 시 제한적 참여를 통한 이익 추구
- 주식관련사채와 해당 주식(또는 주식선물)을 활용하여 차익거래 전략  
(예, A전환사채의 가격이 오르고 해당 주가는 하락이 예상될 경우 전환사채 매수, 주식매도)

##### ④ 룭풋 전략

- 기회 발생 시에만 운용 (상시운용 아님)
- 종목선정: 펀더멘털분석 + 수급분석 + 기술적분석 이용
- 저평가된 주식을 매수, 고평가된 주식을 매도(또는 지수선물 매도)

- 전략예시 -



**<채권 운용전략>**

**① 개별종목 선정 전략**

독자적인 크레딧 분석으로 저평가된 채권 매수 및 고평가된 채권 매도

**② Event Driven 전략**

자금흐름 및 채권수급 등으로 인한 시장의 비정상적 상황 활용전략

주1) 비교지수는 [KOSPI×30% + KOSDAQ×60% + Call×10%]입니다.

주2)이 투자신탁은 국내 채권에 50% 이상, 국내 주식에 30% 이하로 투자하여 운용하므로 상기 비교지수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주3) 집합투자업자는 이 투자신탁의 성과비교 등을 위해서 위와 같은 비교지수를 사용하고 있으며 시장상황 및 투자전략의 변경, 새로운 비교 지수의 등장에 따라 이 비교지수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변경 등록 후 법령에서 정한 절차(수시공시 등)에 따라 공시될 예정입니다.

**3. 운용전문인력**

▶ 책임운용전문인력					
성명	출생년도	직위	운용현황		주요경력 및 이력
			운용중인 다른 집합투자기구수	다른운용 자산규모	
박승철	1971	상무	64	2,144억	고려대학교/동 대학원 수학과 졸업 2000.03~2007.06 현대증권 파생상품운용팀 2007.06~2007.09 마이어자산운용 실물자산팀 2007.09~2009.09 기은SG자산운용 SI운용팀 2010.02~현재 플러스자산운용 주식운용본부장
▶ 부책임용전문인력					
성명	출생년도	직위	운용현황		주요경력 및 이력
			운용중인 다른 집합투자기구수	다른운용 자산규모	
이관홍	1968	전무	6	30,003억	한양대학교 경영학과 1993.08~1999.05 대한투자신탁 채권운용 1999.06~2000.06 중앙종합금융수석펀드매니저 2000.07~2003.08 새마을금고연합회 채권운용 2004.01~2005.11 국앤리치자산운용 2006.01~현재 플러스자산운용 채권운용본부장

[운용중인 다른 집합투자기구 수 중 성과보수가 약정된 집합투자기구]: 해당사항 없음

주1) 상기인은 이 투자신탁의 투자전략 수립 및 투자의사결정 등에 주도적, 핵심적 역할을 수행하는 운용전문인력입니다.

주2) 운용전문인력의 최근 과거 3년 이내에 운용한 집합투자기구의 명칭, 집합투자재산의 규모와 수익률 등은 금융투자협회 홈페이지(www.kofia.of.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주3) 당사는 팀운용으로, '운용중인 다른 집합투자기구 현황'은 해당 운용전문인력 소속 팀의 운용규모로 기재하였습니다.

**4. 투자실적**

(단위: %)

기간	최근 1년차	최근 2년차	최근 3년차	최근 4년차	최근5년차
	17.05.21 ~18.02.20	16.05.21 ~17.05.20	16.05.17 ~16.05.20		
ETF분할매매 증권1호(채권혼합)	2.52	3.11			
비교지수	3.37	6.16			
ETF분할매매 증권1호(채권혼합) 종류 A	1.67	2.19			
비교지수	3.37	5.46			
ETF분할매매 증권1호(채권혼합) 종류 A-e	2.10	2.94			
비교지수	3.37	5.98			
ETF분할매매 증권1호(채권혼합) 종류 C	1.50	2.08			
비교지수	3.37	6.16			
ETF분할매매 증권1호(채권혼합) 종류 C-i	2.08	2.65			
비교지수	3.37	5.93			
ETF분할매매 증권1호(채권혼합) 종류 C-f	2.13	2.71			
비교지수	3.37	6.16			

주1) 비교지수 : [KOSPI×30% + KOB1120×60% + Call×10%]

주2) 비교지수의 수익률에는 운용보수 등 투자신탁에 부과되는 보수 및 비용이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주3) 연도별 수익률은 해당되는 각1년간의 단순 누적수익률로 투자기간동안 이 투자신탁 수익률의 변동성을 나타내는 수치입니다.

주4) 종류형투자신탁의 경우 연도별수익률 그래프는 모든 종류 수익증권을 통합하여 운용하는 투자신탁(전체)를 기준으로 작성하였습니다. 이 경우 투자신탁(전체)의 수익률에는 운용보수 등 투자신탁에 부과되는 보수 등이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 (2) 주요 투자위험 및 위험관리

### 1. 주요 투자위험

구분	투자위험의 주요내용
금리변동위험	일반적으로 이자율이 하락하면 채권가격의 상승에 의한 자본이득이 발생하고 이자율이 상승하면 자본손실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채권을 만기까지 보유하지 않고 중도에 매도하는 경우에는 국내외 시장상황에 따라 손실 또는 이득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주식등 가격변동위험	주식의 가치는 일반적으로 발행회사 고유의 위험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거시경제지표의 변화에 따라서도 급변할 수 있습니다. 특히 주식은 다른 여타의 자산보다 그 변동성이 큰 특징이 있으며, 이로 인해 주식투자 시에는 투자원금의 손실 가능성이 매우 큰 위험이 있습니다.
ETF 투자위험	이 투자신탁의 투자대상인 ETF(Exchange Traded Funds)는 상장폐지위험, 추적대상지수에 대한 추적오차발생위험, 거래규모 및 기초자산의 유형에 따른 유동성위험, 증가와 NAV(순자산)의 괴리위험, 설정/환매시 세금부담위험, 추적대상지수의 산출방식 변경 및 중단위험 등을 내포하고 있으며 이로 인하여 펀드의 가치가 하락할 수 있습니다.
환매청구시 위험	환매를 청구하시는 날과 환매대금을 결정하는 기준가격 적용일이 다르기 때문에 환매시 환매청구일로부터 환매기준가격 적용일까지의 집합투자기구 재산의 가치변동에 따른 위험에 노출됩니다. 또한 환매수수료가 부과되는 기간 중에 환매한 경우에는 환매수수료의 부과로 인해 투자손실이 발생하거나 손실의 폭이 더욱 확대될 수 있습니다.
투자신탁 해지위험	투자신탁이 설정한 후 1년 경과시점에서 설정원본이 50억원 미만이거나 설정하고 1년이 경과한 이후 1개월간 계속하여 투자신탁의 원본액이 50억원에 미달하는 경우 집합투자업자가 투자자의 동의 없이 해당 집합투자기구를 해지할 수 있습니다.

### 2. 위험관리

① ETF 분할매매전략의 주식관련 ETF 매매 시 매매원칙에 근거하여 전략을 수행합니다.

- ② 철저한 신용분석을 통한 선제적 리스크 관리와 지속적인 시장 모니터링을 통해 신용위험에 선제적으로 대응합니다.
- ③ 운용팀에서 운용정책, 자산배분, 투자전략을 수립하며 운용팀내 투자 의견을 집약하여 체계적이고 신속한 공동의사결정 과정을 도입합니다.
- ④ 신용등급 A- 이상 우량 채권 위주의 자산구성으로 수익성, 안정성 및 유동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투자 합니다.

### Ⅲ. 집합투자기구의 기타 정보

#### (1) 과세

투자자는 투자대상으로부터 발생한 이자, 배당 및 양도차익(해외주식 매매차익 포함)에 대하여 소득세 등(개인 및 법인 15.4%)을 부담합니다.

#### ▶연금지축계좌 가입자에 대한 과세

소득세법 시행령 제40조의2에 따른 연금지축계좌를 통해 동 투자신탁에 가입한 가입자의 경우 동 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을 환매하는 시점에 별도의 과세를 하지 않으며, 연금지축계좌에서 자금 인출시 다음과 같이 과세하며, 관련 사항은 “연금지축계좌 설정 약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연금지축계좌 과세 주요 사항]

구분	주요 내용
납입요건	가입기간 5년 이상, 연 1,800만원 한도 (퇴직연금, 타 연금지축 납입액 포함)
수령요건	55세 이후 10년간 연간 연금수령한도 내에서 연금수령 (가입자의 수령개시 신청 후 인출)
세액공제	연간 연금지축계좌 납입액 400만원 이내 세액공제 12% 단, 연금지축계좌 세액공제는 2014년 1월 1일 이후 납입액부터 적용 - 다만, 종합소득금액 4천만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액 5천 500만원) 이하인 거주자의 경우 연간 연금지축계좌 납입액 중 400만원 이내 세액공제 15% - 다만, 종합소득금액 1억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액 1억 2천만원) 초과하는 경우 연간 연금지축계좌 납입액 중 300만원 이내 세액공제 12%
연금수령시 과세	연금소득세 5.5~3.3%(나이에 따라 변경, 종합과세 가능) 단, 이연퇴직소득은 3.3% (지방소득세 포함)
분리과세 한도	1,200만원(공적연금소득, 의료목적 및 부득이한 사유의 인출, 이연퇴직소득의 연금수령 시 제외)
연금외 수령시 과세 (통상적인 경우)	기타소득세 16.5%(지방소득세 포함) 단, 이연퇴직소득은 퇴직소득 과세기준 적용
해지가산세	없음
부득이한 연금외 수령사유	- 천재지변 - 가입자의 사망, 해외이주, 파산 또는 개인회생절차 개시 - 가입자 또는 그 부양가족의 질병·부상에 따른 3개월 이상 요양 - 금융기관의 영업정지, 영업 인·허가 취소, 해산결의 또는 파산선고
연금외 수령시 과세 (부득이한 경우)	기타소득 13.2% 분리과세 (지방소득세 포함)
연금계좌 승계	상속인(배우자)이 승계 가능

※ 연금지축계좌 관련 세제는 소득세법 등 관련 법령의 개정 등에 변경될 수 있으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퇴직연금 가입자에 대한 과세

투자신탁에서 발생한 이익에 대하여 원천 징수하지 않으며, 투자자는 퇴직연금 수령시 관련세법에 따라 세금을 부담하게 됩니다. 따라서 일반 투자신탁 투자시의 과세와는 상이한 세율이 적용됩니다.

**①세액공제(2015년 1월 1일부터)**

해당 연도의 연금계좌에 납입한 금액(퇴직연금계좌에 납입한금액 + 연금저축계좌에 납입한 금액 중 400만원 이내의 금액)과 700만원 중 적은 금액의 12%에 해당하는 금액을 세액공제 합니다.

- 다만, 종합소득금액 4천만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액 5천 500만원) 이하인 거주자의 경우 연간 연금저축계좌 납입액 중 400만원 이내 금액과 합산하여 700만원 한도 내에서 세액 공제 15%
- 다만, 종합소득금액 1억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액 1억 2천만원) 초과하는 경우 연간 연금저축계좌 납입액 중 300만원 이내의 금액과 합산하여 700만원 한도 내에서 세액공제 12%

**②과세이연**

투자신탁의 결산으로 인한 재투자 시 재투자 수익에 대하여 원천징수하지 아니하고, 퇴직연금 수령 시 연금수령 방법에 따라 과세됩니다.

**③퇴직연금 수령 방법에 따른 과세체계의 다양성**

연금수령, 일시금수령 등 수령방식에 따라 과세체계가 다양하게 결정될 수 있습니다.

※ 퇴직연금제도 관련 세제는 소득세법 등 관련 법령의 개정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상기 투자소득에 대한 과세내용은 정부 정책, 수익자의 세무상의 지위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수익자는 투자신탁에 대한 투자로 인한 세금 영향에 대하여 조세전문가와 협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2) 전환절차 및 방법**

해당사항 없음

**(3) 집합투자기구의 요약 재무정보**

집합투자기구의 요약 재무정보에 대한 사항은 정식 투자설명서의 '제3부 집합투자기구의 재무 및 운용실적에 관한 사항'의 '1. 재무정보'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